

성과감사

성과감사 결과 보고서

- 가족수당 지급기준 관련 -

2015. 1.

 감사실
대한지적공사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목적	1
2. 감사대상 및 범위	1
3. 감사중점	1
4. 감사기간 및 인원	1
II. 가족수당 운영 현황	2
1. 가족수당 지급기준 개정 연혁	2
2. 가족수당 지급기준	2
3. 가족수당 수급 자격 조사방법	3
III. 감사결과	4
1. 총평	4
3. 지적사항 총괄	4
3. 지적사항 요약	5
III.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5
IV. 기타사항	5

I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급여규정 제6조 별표 3의 “가족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하는 가족수당에 대하여 지급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사례를 분석하고, 수급 직원이 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감사대상 및 범위

2014년 10월 현재 가족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격 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사규^{급여규정} 와 2009. 5. 25.에 문서로 시달된 “가족수당 지급요건 해석”에 대한 효력 및 해석의 적정성 등을 범위로 하였다.

3. 감사중점

이번 감사에서는 가족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급여규정 제6조 별표3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의 적정성 및 문서로 시행된 “가족수당 지급요건 해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중점 감사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이번 감사를 위하여 2014. 10. 20.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10일간 예비 조사를 한 후 같은 해 11. 3.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20일간 감사인원 3명이 실지감사를 하였다. 그 후 사외 법률자문과 감사실·청렴윤리부의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2014. 12. 30. 감사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가족수당 운영 현황

1. 가족수당 지급기준 개정 연혁

개정 연혁	배우자	자녀, 부모	장애인	3자녀 이상	6세 이하	인원제한
'83.11.01. 이전	0.5만원	0.5만원				4인 이내
1983.11.01.	1.5만원	0.5만원	-	-	-	“
2000.01.01.	3만원	2만원	-	-	-	“
2006.06.01.	“	“	-	-	-	제한 없음
2009.01.01.	“	“	-	-	5만원	“
2010.09.10.	4만원	“	10만원(자녀)	-	‘	“
2011.11.28.	“	“	10만원 (부양가족)	5만원 가산	“	“
2012.09.26.	“	“	“	10만원 가산 <small>(2011.12.31.이전 출생자는 5만원)</small>	“	“

※ 그 외 내용은 개정 사항이 없음

2. 가족수당 지급 기준

【공사 사규 및 문서】

급여규정 제6조	가족수당 지급요건 해석 및 조사 요령
<p>【별표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3급 이상 연봉제 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지닌 직원의 <u>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u>으로서 당해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u>다만, 그 가족이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한다.</u> <p>※<u>허위의 방법으로</u>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토록하고, 1년간 가족수당 지급을 정지한다.</p>	<p>가족수당 지급요건 해석</p> <p>부모의 부양가족 신청시 장남의 경우 주소와 상관없이 호적등본 제출시 지급하였으며, 그 외 차남 등은 주소가 같아야 지급하고 있음 (2009.05.25. 문서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지급 - 직계존속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주소지 동일해야 지급하고 단, 장남의 경우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지급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요령】

-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지급
-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에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급
- 직계존속의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지급
 - * 장남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지급 하였으나 1999년 1월부터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지급
- 동일가구내 주소지가 같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가족수당 수급자격 조사 연혁

- 가족수당 지급 철저 지시(△△실-930: 2009.05.25.)
 - * 감사원 감사결과 및 가족수당 지급요건 해석 통보(본사 ○○○○팀)
- 가족수당 지급철저 지시(본사 ○○팀-1998: 2009.05.25.)
 - * 가족수당 지급요건 해석 시달(전 기관)
- 가족수당 수급자격 조사(본사 ○○팀-4189: 2009.10.26.)
 - * 본부 자체 조사 후 일제 정비(정비결과 사후점검 미실시)

3. 가족수당 수급자격 조사 방법

○ 조사방법

- 본사, 연구원, 연수원: ▲▲부
- 본부, 지사: 본부 급여담당자가 조사후 ▲▲부로 제출

○ 서류 제출 방법

구분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구성 (주민등록기준)		본인 배우자·자녀 직계존속	본인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본인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확인 서류	일반	· 본인 주민등록등본 ·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 포함)	· 본인 주민등록등본 ·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 포함)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주민등록등본 ·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 포함)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주민등록등본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부 or 모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주민등록등본 · 부 or 모 가족관계증명서
	장남	· 본인 주민등록등본 · 부 or 모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부 or 모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주민등록등본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

※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발급시 본인 외 부양가족은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발급하시고 주민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직접 삭제

Ⅲ. 감사결과

1. 총평

- 급여규정 제6조 별표 3의 가족수당 지급기준 중 “다만, 그 가족이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 외부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주소지는 필수조건이고 생계에 대한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과 부양가족과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부양가족에 포함한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 또한 2009. 5. 25.에 문서로 시행한 “가족수당 지급요건 해석”은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요령”을 일부 참조하여 작성·시행한 것으로 호주제 폐지 및 남녀평등 사상에 비추어볼 때 해석의 정당성을 밝히기 어렵고, 문서로 지시된 내용은 적용시점에 문제가 있어 사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따라서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명확한 사규^{급여규정} 개정이 요구된다.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구분	총괄 (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현지 처분	제도 개선	모범 사례
		통보	시정	개선	권고	회수	지급	징계	문책	고발			
건수 (인원)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금액	0	0	0	0	0	0	0						

3. 지적사항 요약

1 가족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개정

< 요약 >

- 급여규정 제3조의 별표3 “가족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 가족수당 지급요건 해석(○○팀-1998:2009.05.25.)
- ☞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직원간 형평성, 호주제 폐지, 남녀평등 사상,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등을 참조하여 해석의 이견 없도록 합리적이고 명확한 사규 개정 필요
- ☞ 가족수당 허위 수급자에 대한 판단 기준 마련과 직원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연 1회 가족수당 수급자격 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 마련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천원)

처분지시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건 명	처분요구			조치 기한	감사자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1 - 1	○○부	가족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개선	개선			2개월	

Ⅳ. 기타사항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처분 요구
- 감사결과 공감시스템, e감사시스템 입력 및 공시

[별첨]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끝.

감 사 실

개 선

제 목 가족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개선
관 계 기 관 △△부
내 용

「급여규정」 제6조의 별표 3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지닌 직원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그 가족이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토록하고, 1년간 가족수당 지급을 정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9. 5. 25.자로 시행한 「가족수당 지급 철폐」 문서상의 “가족수당 지급요건 해석”의 내용을 보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동일세대 구성 여부와 무관하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동일세대 구성이 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장남의 경우에는 동일세대 구성 여부와 무관하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가.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불명확

위 규정의 단서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주소지는 필수조건이고 단서조

항은 생계에 대한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과 주소와 생계 모두를 포함한다는 해석으로 부양가족과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부양가족에 포함한다는 해석이 가능하여 “가족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나. 허위수급자에 대한 판단기준 부재

위 규정에서 정의하는 허위의 방법이 서류를 조작한 것인지 변동신고를 게을리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다. 규정 해석의 부적정 및 문서효력의 문제점

문서(○○팀-1998 2009. 5. 25.)로 시행한 “가족수당 지급요건 해석”의 내용은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일부 적용하여 해석한 것으로 공사 급여규정을 해석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해석 내용을 사규에 반영하지 않아 문서 시행일 이후에 입사한 직원 및 급여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문서를 기준으로 업무에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에는 호주제 폐지 및 남녀평등 사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장남의 예외 경우를 1999.01.01.자로 폐지하여 시행하였으나 공사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사회적 통념 및 직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사장(▲ ▲부장)은 급여규정 제6조의 별표 3 “가족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대하여 직원 간 형평성 및 사회적 통념^{호주제폐지, 남녀평등 사상 등} 등을 고려하여 해석의 이견이 없도록 하고, 또한 연 1회 가족수당 수급자격 조사를 의무화하여 부양가족 변동신고 누락사례 및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허위신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사규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